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노동개혁,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-

2023. 1. 9.

고용노동부

순 서

Ⅰ. 추진성과와 평가 ····· 1

Ⅱ.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····· 2

Ⅲ. 핵심 추진과제 ····· 4

1 노동개혁의 완수 ····· 4

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····· 8

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····· 9

Ⅰ. 추진성과와 평가

1 주요 정책 성과

✓ **국정과제**의 차질없는 **이행 → 법·원칙 확립, 개혁 청사진 마련** 등 **성과**

□ 산업현장의 법·원칙 확립

○ 대우조선 하청노조, 화물연대 등 **불법행위**에 **법·원칙에 따라 대응**

- 조선업의 경우 **근본원인(이중구조) 해소**를 위한 **구조개선 대책*** 수립

  * 하도급 구조 개선, 인력난 해소 등 →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·운영(`22.11~)

○ 노조의 **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** 발표(자율점검, 법령 개정 추진 등)

  * `22.12.29~`23.1.31 자율점검 → 점검결과 보고 및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부과 예정

※ 역대 정부 대비 **現 정부 출범 첫해 근로손실일수 대폭 감소***

  * 근로손실일수 비교(5.10~12.31, 만일): 現 정부 22.9 / 文 80, 朴 61.4, 李 63.4

□ 상생·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개혁 청사진 마련

○ **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발표**('22.12) → **노동개혁 청사진** 마련

○ 중대재해의 OECD 수준 감축을 위한 **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** 수립

▪ **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**	: 노사 선택권 + 근로자 건강권 + 노동규범 현대화
▪ **중대재해 감축 로드맵**	: 사후통제, 규제·처벌 → 사전예방, 자기규율·엄중책임

□ 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

○ **외국인력 신속입국** 등 **구인난 대책 수립**, 제조·해외건설업 **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**(90→180일) 등 **현장 어려움 해소**

2 개선 필요사항

□ **입법안 마련, 개혁과제 논의 확장** 등 속도감 있는 **개혁 추진** 필요

□ **노동개혁**, 중대재해 감축 등 **국민**이 **체감**할 수 있는 **실질적 성과 도출에 주력**할 시점

Ⅱ.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 추진 여건

✓ 산업·인구구조는 변화하는데, 불합리한 관행·낡은 규범은 잔존, 불확실성 증가

□ 산업·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직면

○ **디지털·신기술** 일자리가 **확대**되면서, **고탄소·노동집약산업** 등의 **축소·쇠퇴**는 **불가피, 대-중소기업 임금격차도 확대***

* 임금격차(300인 미만 / 300인 이상): (`20) 60.9% → (`21) 59.4%

○ **인구 감소, 초고령사회 진입**('25ᵉ) 등 **노동생산성 저하**, 다양한 고용형태·MZ세대 증가 등으로 **직업·근로조건에 대한 인식도 변화**

※ 블라인드앱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

□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·경직적인 노동규범

○ **법 경시 풍조**, 노사갈등 시 과도한 정부 의존 등 **불합리한 관행 지속**

○ 노사가 **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대립**
→ 정부가 노사를 설득하며 **강력하게 개혁을 추진**할 필요

* (예) 노조법: [勞]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 요구
[使] 대체근로 금지 완화, 사업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 강화 요구

○ '53년에 만들어진 **근로기준법**이 큰 변화없이 **70년간 유지**

□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

○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,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**경기둔화가 지속**되면서 **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** 예상

→ 전년 대비 **올해 취업자 증가폭**은 **축소**(지난해의 10% 수준) **전망***

* **`22→`23년 기관 전망**(만명): (**KDI**) 79 → 8 (**한은**) 82 → 9 (**노동硏**) 83 → 9

2 업무 추진 방향

비전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

목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

과제 1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.

1. 노사 법치주의 확립
2. 노동규범 현대화
3.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

과제 2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.

1.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
2. 상생과 연대의 산업·노동 생태계 조성
3.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

과제 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.

1. 기업 구인난 해소
2.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
3.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
4. 고용상황 대응: 단기 컨틴전시 플랜 + 중장기 체질개선

Ⅲ. 핵심 추진과제

1 노동개혁의 완수

1 노사 법치주의 확립

□ (**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**) 노동조합 **운영·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·보존의무 확행***을 통한 **자율적 통제 강화** 및 **시행령 개정**** 추진

* 자율점검 기간 운영(`22.12.29~`23.1.31) → 점검결과 보고요구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
**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, 공표방법 보완 등

○ **'노조 회계 공시시스템'** 구축 추진(자율공시→2월 회계 투명성 노조법 개정안 발의)

○ **사무실 지원실태,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*** 및 **개편****(~3월)

* '22년 사업수행한 38개 단체 51개 사업 대상 결산 등 철저
→ 문제 있는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결과 불인정 및 환수, 차년도 제재 등

** MZ세대,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

□ (**불법·부당한 관행 개선**) **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** 운영(1.20~) 및 시정조치(2월~) → **불법·부당행위 규율*** 신설 **법 개정안 발의**(2월)

* 노동조합 가입 등 강요,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금지

○ 경사노위 **'노사관계 제도·관행 개선 자문단'** 구성, 과제 발굴·논의

* (과제예시) 회계투명성 강화, 노사 현장 불법 근절, 노사 대등성 확보 등
(추진일정) 자문단 출범·운영(1월~) → 전문가안 발표(5월) → 국회제출(8월)

○ ▲**건설현장 불법행위 부처 합동 지도·점검***, ▲'정년퇴직·장기근속자 자녀 우선·특별채용' 등 **불공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** 등 병행

* 고용부·국토부·공정위·경찰청 합동으로 상·하반기 일제 점검 실시

□ (**공정채용 문화 확산**) 채용절차법을 **공정채용법으로 개정**(6월 국회제출)
→ **실질적 공정성** 확보, **채용과정 투명성** 제고, **법 이행력** 강화

* 채용강요·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강화, 채용정보 제공 확대 등

□ (**5대 불법·부조리 근절**)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

유형	추진내용
❶ 포괄임금 오남용	▸**역대 최초 기획형 수시감독**(1~3월) ▸**'공짜야근'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마련**(1분기)
❷ 임금체불	▸**취약시기·계층 집중지도** ▸**상습체불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**
❸ 부당노동행위	▸**상시 감독체계 구축** ▸**수사역량·기법 고도화 등 수사 강화방안 마련**
❹ 불공정 채용	▸**분야별 집중점검**(상·하반기) ▸**현장점검, 직권조사 강화방안 마련**
❺ 직장내 괴롭힘	▸**취약업종**(보건, IT 등) **컨설팅** ▸**소규모사업장 예방교육 강화**(6,500개소) ▸**반복 위반 사업장 신속 제재(즉시 과태료)**

2 노동규범 현대화

□ (**근로시간**) **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 등 제도개선안***(입법안) **마련**
→ **입법예고(2월)** 후 상반기 국회 제출

- ▲ **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**: 1주 단위 → **年 단위**까지 확대
- ▲ **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**: 연구개발 外 1개월 → **全 업종 3개월**
- ▲ '**근로시간 저축계좌제**' **도입**: 연장근로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
- ▲ **11시간 연속휴식 보장** 등 **근로자 건강 보호**

○ 포괄임금 등 **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기획감독**(1월) 및 **근절대책* 수립**(2월)

* ▲**오남용 방지**: 감독 강화,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, 임금명세서 교부 지도 등 ▲**자율개선 지원**: 컨설팅 사업 확대 개편, 영세기업 인센티브 지원 ▲**근로시간 기록·관리 지원** 등

🗁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후속조치

▪ **1년간**(1.1~12.31) **계도기간 부여, 근로시간 컨설팅** 등 **행·재정적 지원***

* ▲1:1 전문가 컨설팅 집중 제공 ▲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장 자가진단표 배포 등

□ (**추가과제**) **노동규범 현대화**를 위한 **제도개선 추진**

○ **파견제도 선진화***

*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, 파견·도급기준 법제화, 파견대상 확대

○ 근로자대표의 **민주적 선출절차** 등 **제도화** 및 **직종·직군 특성**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하도록 **부분 근로자대표*** 도입

* 특정 직군·직종 등 해당 근로자 동의 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확화

○ **노사 대등성 확보**를 위한 **노조설립·단체교섭·대체근로** 등 개편 검토

⮞ 경사노위 연구회 운영(1월 ~) → **정부안 마련**(6월) → **법안제출**(~ 8월)

* 온라인플랫폼(경사노위), 2030서포터즈 운영 등 미래세대·국민 목소리를 노동개혁에 반영

3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

□ 취약분야 집중 지원

○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등 **3대 사고 8대 요인*** **집중 점검**(1만개소)

* **3대 사고**: 추락·끼임·부딪힘(사망사고의 62.8%) / **8대 요인**: 추락비계·지붕·사다리·고소작업대, 끼임방호장치·LOTO(Lock Out, Tag Out), 부딪힘혼재작업·충돌방지장치 등

- 8대 요인 중심 **스마트 안전장비**(인공지능 인체감지 등) **집중 지원**(250억원)

○ **소규모**(50인 미만)·**제조업** 사업장 **위험공정개선 지원**(4,820억원)

- **중소기업** 안전보건 **컨설팅** 확대* 및 **대-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****

* ('22) 3.5천개 → ('23) 1.6만개 / ** ('22) 5.3억원 → ('23) 99.1억원

○ 일하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**산재병원·근로자건강센터·직업병 안심센터** 등을 활용해 **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및 예방체계 강화**

* 산재병원(10개소), 건강센터(23개소), 트라우마센터(13개소), 직업병안심센터(6개소) 등

- **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** 시행(7월) 및 **산재 신속 처리**

* 전속성 폐지에 따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규모 : 173만명
↳ 現 적용 80만명 + 신규 적용 49만명 + 비전속 44만명

□ 위험성 평가*를 보편적 예방 수단으로 확립

💡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제도

○ 중대재해 예방·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**위험성평가 개편*** 및 **의무화** (**'23년: 300인 이상** → '25년: 5인 이상, 산업안전보건법 개정)

* 고시 등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·방법·절차 등 대폭 개선(3월)

○ **감독**(1.7만개), **컨설팅**(2.6만개), **기술지도**(20만개), **교육** 등을 **위험성평가 중심**으로 **개편**

'23년: 총 1.7만개소 + α	
위험성평가 점검 0.7만개	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확인·지도하는 '점검'으로 개편
일반감독 1만개+α	고위험 업종·시기, 재발 우려 동종·유사 업종 기획감독(수시)
특별감독	다수(2인 이상 동시 사망) 및 다회(1년간 3회 이상) 사망사고 발생시

○ **중대재해 발생**시 위험성평가 적정성, 근로자 참여 여부 등 **엄정 수사**

□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 확산

○ 위험성평가 **근로자 참여 확대** 및 위험상황 발생 시 **근로자 작업 중지권 활성화**(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)

○ 법령상 근로자 **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**(연내), 안전수칙 **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*** **신설** 등 근로자 책임 명확화

*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·확산(상반기)

○ 지역별 **'안전문화 실천 추진단'**(2월), **안전문화 국민캠페인** 등을 통해 **국민적 안전의식을 확대**하고 문화를 확산

□ 안전보건산업 육성 방안 마련

○ 스마트기술 **안전장비 개발·보급**(신규 250억원) 등 **디지털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**

* 고용부-과기부 간 「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」 MOU('22.11) 이행·추진

○ **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*** 제정 추진 등 **「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」** 마련(6월)

* 교육, 기술지도, 인재양성, R&D 지원근거 마련 등

□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

○ 처벌요건 명확화, 제재방식 개선 등 **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**를 위해 **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선방안 마련**

* 전문가 TF운영(1~5월) →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 마련(6월) 후 입법추진

○ **위험성평가 중심**으로 現 **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 정비**(1분기~)

*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편, 근로자 의무 명확화 등

- **기술·산업변화**에 따라 **안전보건규칙 단계적 현행화**(1월 입법예고)
- **안전보건규칙**을 예방·처벌 규정으로 분류하여 **필수 기준은 처벌을 유지**하고, **선택·대체 가능 사항**은 **고시·가이드** 등으로 전환(1분기~)
- 특히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토록 **부적합·불합리한 노후 규정**을 **신속히 폐지** 또는 **개선**(1월 입법예고)

* (예) ①안전난간 기둥을 촘촘히 설치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무 예외 인정
②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 설치 기준 등 ③굴착면 기울기 기준 합리화 등

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

1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

□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, 정책 권고 등 **임금체계 개편을 지원**하는 **「상생임금위원회」** 설치*(1월)

* 임금격차 실태조사·공표 및 정책권고 등

○ 직무·성과 중심 **임금체계 개편 기업** 대상 **지원방안*** 등 논의

* ▲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기준 마련(1분기), ▲각종 정부 지원 시 우선 선정

□ **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*** 등 **'임금체계 구축 패키지' 신설**

* (건수) '22년 570건 → '23년 1200건, (내용) 개편 논의-착수-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

□ **임금-직무 세부정보를 결합**한 **「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」** 구축(12월)

* 한국형 O*net 구축·설계 관련 '23년 예산 7억원 반영

2 상생과 연대의 산업·노동 생태계 조성

□ 조선업 **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·이행** 및 **정부 패키지 지원** → **상생모델 구축**(1분기)

○ 패키지 지원 **모듈화** → 향후 타 업종 확대시 **업종별 특성**에 맞게 **맞춤형 인센티브**로 적용(지원방안 지속 보완)

<패키지 지원 모듈화 예시>

인력수급 지원	외국인력 우선 배정, 청년희망공제, 대·중소공동훈련센터 등
임금·복지격차 완화	대·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
공정거래질서 확립	ESG 가점, 납품단가 연동제 등
산업안전	스마트 안전장비, 원하청 안전협력 사업 등

□ 이중구조 **실태조사 추진**(1분기) 및 **타겟 업종** 선정*, **자율확산 기반 조성**** →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

* 모델확산(3분기): 철강 등 타분야 확장

** 원하청 상생연대기금·공동노사훈련 등 자율협력 유도,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

3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

□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를 위해 서면계약 의무화,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**노무제공자**의 **권리보장을 위한 입법** 추진(하반기)

○ **특고·플랫폼종사자**를 위한 **업종별 자율적 공제회 활성화***

* 공제모델·지원방안 마련, 법제화도 병행 검토

□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**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**을 **단계적**으로 **적용**

* 경사노위 내 연구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(~6월)

□ **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**(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, 신청기간 연장 등)

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(노동+공정거래+산업 등 정책 패키지, **1분기**)

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

1 기업 구인난 해소

□ **업종·지역·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**

○ **(업종)** 지역을 넘어 **산업벨트를 형성**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**체계적인 대응**을 위해 **「업종별 취업지원허브」 신설**(반도체·조선 2개소)

- **상시 인력난 업종**(조선·뿌리 등)에 대해 **전담조직** 등*을 통해 **밀착 지원**

* ▲신속취업지원TF: 조선업 6개소(울산·목포 등), 뿌리산업 11개소(인천·수원·부산 등)
▲고용센터에 전담자 지정: 서비스업 48개소

○ **(지역) 지방정부**가 지역 상황·필요에 따라 **중앙정부 일자리사업**에 **추가(PLUS)**하여 지원할 수 있는 **상향식 사업*** 도입('23)

* 예) 조선업 원청의 기술연수원 통한 훈련시, 훈련수당 (중앙사업) 월 20만원 + (PLUS) 월 80만원

- 지역단위로 **산업·고용현황**을 제공하는 **일자리 정보시스템*** 구축(1분기)

* 광역·기초단위의 일자리 환경·量·質·미스매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지표 제공

○ **(기업)** 채용·취업애로 해소를 위해 **진단·컨설팅·맞춤형 서비스**를 제공하는 **「기업·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」 시행***

* ('22) 시범 15개소 → ('23.上) 1차 확대(각 12개소) → ('23.下) 2차 확대(전국 48개 센터)

□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신속 양성

○ **'기업 주도형 혁신훈련', 훈련분야 · 양성규모 확대**(2.8 → 3.6만명)

<훈련분야 확대>

○ **대기업 참여를 확대**하여 첨단산업 **공동훈련 지원 강화***

*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(5개소), K-디지털 플랫폼 확대(20 → 35개소)

○ 신기술 분야 **인력수급 전망 고도화*** 및 **「인재양성 신속절차**」 신설

* 분야별 기초실태조사 문항·주기 통일성 있게 정비, 현장 FGI 등 질적분석 강화 등

** (現) 연초 접수 및 연말까지 심사, 차년도 개설 → (改) 연도 중 시급한 훈련과정 신설

○ 기계·전자 등 **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지원 확대**(4,648억원)

□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

○ 일반고용허가제(E-9)의 경우 **'23년에 역대 최고인 11만명 도입**('22년, 8만명), 차질 없는 **신속 입국** 추진

○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**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** →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**체류기간*** **등 우대** 및 직업훈련을 제공

* 출국-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**최대 10년까지**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

○ **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적용*** 및 **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** 등 기존의 **경직적 총량규제 개선**으로 인력활용상 애로 해소

*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총 고용허용인원 20% 상향 적용(~'23.12.31)

○ 일반 **고용허가제 인력(E-9) 허용 업종**을 **확대***하고, **방문취업동포(H-2)**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**네거티브 방식**으로 **변경**

* 폐기물 처리업, 신선·단순가공식품 도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

2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

□ (청년) 「재학 → 구직」 단계별 맞춤형 지원, 프로그램의 양과 질 제고

○ 고교 현장직무·역량 기반 **직업계고 신기술훈련 강화** 및 **일학습병행 확대***

* ①첨단산업 아카데미 12개소, ②신기술 유망분야 55개 학과, ③경력개발 고도화 지원 10개소

○ 대학 **재학 중 조기개입, 직업훈련·일경험** 등 **맞춤형 서비스*** 제공

* (규모)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 10개교 시범 실시
(내용) 빌드업(저학년): 직업포트폴리오 설계 ➡ 점프업(고학년):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지원

○ **일경험 지원 확대**(1→2만명, 프로그램 다양화) 및 **구직단념청년** 지원 **프로그램 고도화, 도전준비금 신설**(최대 300만원, 8천명)

□ (여성) **출산-육아-돌봄의 全 과정에서 일·가정 양립을 지원**

○ **경력단절 예방, 맞돌봄 문화 확산**에 중점을 두고 '**모성보호제도***' 개편

* ❶ 육아휴직: 부모 공동육아 사용시 휴직기간 1→1.5년 확대
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대상자녀 연령 확대(만8세 → 12세 이하) 및 사용기간 확대
❸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(경력단절여성DB 기능 개선, 대체인력 취업알선 내실화)

○ '**성별근로공시제***' 단계적 도입('23.下, **공공기관**),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속 구제 등 **성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**

* 고용상 성별현황(채용·임금·임원 비율 등) 공시를 통해 자율적 성별격차 개선 유도

□ (고령자) **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중장년 이·전직 지원강화**

○ **임금체계 개편**과 **계속고용 법제화** 등 **사회적 논의 착수**(상반기), **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*** 등 **자율적 계속고용 지원** 강화

*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한 사업주 지원(1인당 분기 90만원, 2년)<3천명 → 8.3천명>

○ 퇴직예정자 **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*** 등 **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**

* 1,000인 미만 기업 자율적 이행지원 신설, 200개소

□ (장애인) **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접지원 확대**

○ 대기업·금융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**상호출자제한, 금산분리** 등 **자회사 설립 제한 규제 완화** 협의*(금융위, 공정위)

* (案)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지주회사의 상호출자제한(공정거래법) 및 은행·보험회사의 지분·업종소유 제한(은행법·보험법 등)의 예외 허용

- 표준사업장 **판로확대**를 위해 **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상향**(0.6→0.8%)

○ **고용장려금 단가 상향*** 등 **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**을 **강화**하는 한편, **근로지원인, 출퇴근비용**** 등 **장애인 근로자 직접지원 확대**

* (지원수준, 만원) 男·경증 30→35, 女·경증 45→50, 男·중증 60→70, 女·중증 80→90

** 출퇴근비용지원 지원대상 확대(기초·차상위 장애인근로자): ('22) 3,850명 → ('23) 15,440명

3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

□ (실업급여 수급자) **반복수급자 단계적 감액 등* 재취업 기능 강화**

* ▲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(3회 10%, 4회 25%, 5회 40%, 6회 이상 50%), ▲단기 이직자 다수 발생 사업장 보험료율 추가 부과 등(법 개정 추진, 환노위 계류)

○ 실업인정 **재취업 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**(5월), 면접불참 등 **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 제재, 부정수급 기획조사·특별점검 강화**

□ (국민취업지원제도) 지자체 협업을 강화, **서비스 대상자를 선제적 발굴·지원**하여 **비경활**인구의 **노동시장 진입 촉진**

* 복지대상자 중 취업희망자 적극 발굴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
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**구직촉진수당 일부 지급, 일자리 탐색기회 보장**(법 개정 추진, 환노위 계류)

* (현행) 57.7만원 이상 소득발생 시 수당지급 정지 → (개선) 소득수준에 따라 부분 감액 지급

○ **구직촉진수당 차등화*, 조기취업 시 잔여수당의 50% 지급** 등 근로의욕 고취

* (현행) 월 50만원 → (개선) 부양가족에 따라 수당 차등 지급(월 최대 90만원)

□ (전달체계 고도화) 급여지원에서 **취업·채용 서비스 전문기관**으로 도약

○ **고용-복지 융합 서비스**를 **강화**하는 오프라인「**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**」(시범 4개소)와 온라인「(가칭)**고용24**」 구축

○ 생애단계별 경력설계 지원을 위해 **AI기반 잡케어 서비스를 고도화**하고, **훈련정보와 워크넷(고용서비스 포탈) 연계서비스** 제공

□ (**제도 기반 구축**) **고용보험 관리체계**의 **소득기반*** 전환('23.下, 개정안 제출) 및 **고용서비스 기본법**으로 **「직업안정법」 전면 개정****(환노위 계류중)

* 소득파악체계 기반 조세·사회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추진

** 신산업 확대에 따른 플랫폼 규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

□ (**퇴직연금**) **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**이 강화될 수 있도록 **단계적 의무화**, 연금성 확대, 취약계층 재정·세제지원 등 추진

* 국회 연금개혁 논의 등과 연계하여 「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」 마련('23.上)

🗁 주요 일자리 대책 발표 일정

- (**청년**) 「**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**」, 「**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방안**」(1월)
- (**여성**) 「**제7차 남녀 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기본계획**」(2월)
- (**고령자**) 「**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**」(1월)
- (**장애인**) 「**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**」(4월)
- (**고용서비스**) 「**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**」(1월)

4 고용상황 대응: 단기 컨틴전시 플랜 + 중장기 체질개선

□ (**단기**) **노동시장 모니터링 → 경기 불확실성 및 고용둔화 대응**

○ 범정부 「**일자리TF***」 구축, 고용악화 시 「**비상경제회의**」와 **연계**

* 기재·고용 차관 공동주재: 일자리 과제·대책 발굴 + 일자리 사업 총괄 점검

- **정책역량**을 **집중**하여 **선제적으로 고용둔화**를 **예방**하고, **고용상황 악화시 단계별 대응전략**(Contingency Plan) **즉시 가동**

□ (**중장기**) 정부 **일자리 대책**을 담은 「**고용정책기본계획**」 수립(1월)

* ①산업·인구구조 전환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, ②신성장산업,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블루오션 발굴 지원, ③단기일자리 지원은 축소, 고용서비스·직업훈련 투자는 확대